

인가번호 제 호

(조합·연합회·전국연합회) 설립인가증

명 칭 :

대표자 성명 :

주 소 :
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1조제1항, 제60조제1항 또는
제72조제1항에 따라 위 설립을 인가합니다.

년 월 일

공정거래위원회 (인)
시·도지사